

매립지등 관리·처분 계획 공고

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시화지구 2공구 매립지등에 대한 관리·처분계획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되어 「농어촌정비법 시행령」 제12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관리·처분 대상면적

(단위 : m²)

지 구	공 구	준공면적 (A)	관리·처분계획면적 (일시사용) (B)	제외면적 (A-B)	행정구역 (토지소재지)
시화	2공구	7,584,996.4	4,772,889.4	2,812,107.0	화성시 송산면, 서신면

※ 제외면적은 잡종지 및 임야, 농업기반시설부지(도로, 용수로, 배수로 등) 등 임.

2. 관리·처분 방법 : 일시사용(1년)

3. 관리·처분 계획별 구획 및 면적

- 「매립지등 관리·처분에 관한 규정」 제25조에 따라 매립지등 간척지 관리·처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, 해당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임대자(농지은행부문관리자)가 결정

4. 관리·처분 대상자 결정방법 등

- 「농어촌정비법 시행령」 제13조 및 「매립지등 관리·처분에 관한 규정」 제12조 같은 규정 별표 2에 따라 결정
- ※ 관련규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은 '20년 매립지등 관리·처분계획 공고일 (2020. 2. 26) 이전에 설립된 법인에 한함.

5. 관리·처분 일정

- 매립지등 관리·처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('20.2.26~), 일시사용공고('20.3.11~3.19), 일시사용 신청 및 선정('20.3.16~3.20), 계약체결('20.3.25~3.31)
- ※ 상기 일정은 업무추진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6. 기타사항

-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도 임대간척지에 대한 타작물재배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.
 - 2020년도 신규 임대간척지를 신청하는 임차인은 20%이상 타작물재배 면적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
 - 타작물을 재배하여 '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' 보조금을 받는 법인은 수도작기준 임대료를 적용,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법인은 타작물 기준 임대료를 적용 적용합니다.

- 2020년 신규 임대면적 중 2019년까지 타작물재배로 임대계약된 면적은 2020년도에도 타작물 재배로 임대합니다.

- 매립지등 관리·처분계획에 대한 필지, 면적, 도면은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(유지관리부)에서 열람 가능합니다.
- 일시사용관련 세부사항(규모, 자격기준, 신청방법 등)은 「매립지등 관리·처분에 관한 규정」 제25조에 따른 매립지등 관리·처분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, **일시사용 신청관련 사항은 별도 공고** 계획입니다.
- 이 공고문에 특별히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농어촌정비법령」, 「매립지등의 관리·처분에 관한 규정」, 「매립지등의 관리·처분에 관한 지침」에 따릅니다.
- 추가 정보사항은 우리공사 화안사업단(031-412-1436 조종현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위와 같이 공고함.

2020년 2월 26일



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장

